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궁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9월 24일

발 의 자: 남궁역,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승진,
박춘선, 소영철,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영실, 이종태, 이희원,
임규호, 장태용, 정준호,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훈, 황철규 의원(32
명)

1. 주문

- 서울의 교통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24년 6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면목선을 조속히 착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6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를 본회의에 제출함.

2. 제안이유

-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9.05km의 노선으로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후 '21년 10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고, '24년 6월에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면목선의 재정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지만 면목선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가중되고 있고,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면목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4. 이송처

-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9.05km의 노선으로 서울시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노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고시후 '21년 10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고, '24년 6월에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면목선의 재정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지만 면목선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가중되고 있고,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면목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는 면목선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4. 9.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